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748 발의연월일: 2025. 3. 10.

발 의 자: 구자근・인요한・최수진

김선교 • 신동욱 • 권영세

배준영 • 박준태 • 최은석

박덕흠 • 박형수 • 강명구

박성민 · 김성원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여야간의 첨예한 이견으로 인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안건조정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 활동을 통해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여야간의 논의를 통해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어 안건조정위원회가 마련되더라도 곧바로 법안이 처리되어 버리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심의를 위한 최소 경과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안 제57조의2제6항).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6항 전단 중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조정안에 대해 30일 이상이 경과한 다음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6		
회부된 안건에 대한 <u>조정안을</u>	<u>조정안에</u>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대해 30일 이상이 경과한 다음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